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 격 · 인 력 기 준 의 실 무 경 력
인 정 범 위 확 대 등 을 위 한 32개
대 통 령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교육부 등 15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학 중에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의 자격기준 및 인력의 채용기준으로 실무경력을 요하는 경우 학위 등의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이라도 학위 등의 취득 후의 실무경력에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격 및 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기술인력 등 기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교육과정 이수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확대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의 실무경력 기준 완화(안 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자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의 실무경력을, 대학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수강자격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5. ~ 7. 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4항제4호 중 “재직한”을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강사의 자격 기준란 제2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

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할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것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것

제4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중 “연구경력”을 각각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4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한 경력을”을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7조(「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자격 취득 전 또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 중 “경력”을 “경력(교육 이수 전 또는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과 능력

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과 능력

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제12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같은 호 나목1)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2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스도매사업(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의 자격란 제2호 중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의 자격란 제2호 중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경력은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포함한다.

제18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 및 3) 중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20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위 표의 해당 자격·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이수하기 전과 취득·이수한 후의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11의 일반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

나.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23조의4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

2)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24조의2제2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10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년”을 “11년”으로 한다.

제26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다목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2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4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2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비교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은 위 표 각 호의 자격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이수할 수 있다.

제29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실무경험”을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제31조(「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3제2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마목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14조의5(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u>재직</u> 한 사람	4. ----- ----- ----- ----- <u>재직</u> 한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나.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

<u>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생략)	<u>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u> <u>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u>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u>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것</u>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u>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일 것</u> 8. (현행과 같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u>연구경력</u> 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 ----- ----- ----- ----- <u>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u>연구경력</u> 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 ----- ----- ----- ----- ----- <u>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u>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 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 (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가. (생 략)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 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포 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 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 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u>종사한</u> 사람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u>종사한 경력(학위 취 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u>이 있는</u>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10분의 1(전체 인력이 1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생 략)

나.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 ③ (생 략)

지정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지정 · 신고해야 하는 정보보 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 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 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 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 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	2. ----- -----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6. (생략)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상근(常勤)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 경력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

한다)-----

3. -----

--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1. -----

이상 수행한 <u>경력</u>이 있는 사람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2.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u>수행한 경력을</u>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2. ----- ----- ---- <u>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을 --- ----- ----- --

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감사위원회) ① (생략)	제37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u>경력</u> 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 -----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u>경력이</u>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 ----- ----- ----- ----- <u>경력(학</u> <u>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u> <u>다)</u>-----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분야의 정책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u>경</u> <u>력</u> 이 있는 자 2. 3. (생략)	제13조(교수등의 자격) ----- ----- ----- ----- -----. 1. ----- ----- ----- <u>경</u> <u>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2. 3. (현행과 같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u>각 호의</u>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1. <u>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는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u> 2. <u>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u>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 ----- ----- <u>각 호의</u> 구분에 따른 -----. 1. <u>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과 능력</u> <u>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u> <u>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u> 2. <u>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과 능력</u> <u>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u> <u>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공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 ----- ----- ----- ----- ----- ----- -----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 ----- ----- ----- ----- -----.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	1) -----

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략)

2. ~ 4. (생략)

② · ③ (생략)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
력을 포함한다)-----

2) -----

----- 경력(학위 취득 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

4. _____

1) -----

--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2. ----- ----- ----- ----- ----- -----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u>3년 이상 종사한 경력</u> 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가. ----- ----- ----- ----- -- <u>3년 이상 종사한 경력</u> <u>(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u>5년 이상 종사한 경력</u>이 있는 사람	----- ----- ----- ---- <u>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 (생략) 나.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u>경력</u> 이 있는 사람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다.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u>경력</u> 이 있는 사람	다. ----- ----- ----- ----- -----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u>

2. ~ 4. (생략)	<u>경력을 포함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3조(연구위원)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u>종사</u> 한 자	2. ----- ----- ----- ----- <u>종사</u> <u>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 촉한다. 1. 2. (생략) 3. 시험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 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u>경력</u> 이 있는 사 람 4. 시험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 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u>경력</u> 이 있는 사 람 5. 6. (생략) ⑤ · ⑥ (생략)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4.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5. 6.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6조(준법감시인) ①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u>경력이</u> 있는 사람	나. ----- -----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 나.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 ----- -----

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생 략)

나.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라. (생 략)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

2)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라.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

1. (현행과 같음)

2. -----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u>경력</u>이 있는 사람	----- ----- <u>경력</u> <u>(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u> <u>한다)</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u>10년</u> 이상 있는 사람	3. ----- ----- ----- ----- ----- -- <u>9년</u> -----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u>15년</u> 이상 있는 사람	4. ----- ----- ----- ----- ----- ---- <u>11년</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u>종사</u> 한 사람	7) ----- ----- ----- ----- <u>종사</u> <u>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u> <u>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u>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
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
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
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제

④ -----

-----.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
는 ---

라. -----

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 아. (생략)

자.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차. (생략)

2. (생략)

⑤ (생략)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마. ~ 아. (현행과 같음)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 ⑥ (생 략)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
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
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
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

등록요건)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

-----.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
는 ---

라. -----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제
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정을 마친 사람

바. (생략)

2. (생략)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

-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
력을 포함한다)----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기업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
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 (생략)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
력을 5명 이상 갖추는 것. 이 경
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생략)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
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다. (생략)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
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 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변호사·변리사 또는 <u>공인회 계사</u> 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 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u>경력</u> 이 있는 자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 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 상 종사한 <u>경력</u> 이 있는 자 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공인회 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 <u>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 력을 포함한다)</u> ----- 3. ----- ----- ----- ----- ----- <u>경력(학위 취득 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u>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림·노동·사회정책·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u>실무경험</u> 이 5년 이 상인 사람	2. ----- ----- ----- ----- <u>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 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 ----- -----
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u>종사한</u> 사람	가. ----- ----- ----- <u>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이 있는 ----- -----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u>종사한</u> 사람	나. ----- ----- ----- <u>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이 있는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산림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u>경력이</u> 있는 사람	2. ----- ----- ----- ----- <u>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6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4466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2110 - 3511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2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8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421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연 락 처	(044) 202 - 8404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2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4 - 7360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연 락 처	(02) 2079-6922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283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2) 481-7446